

#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통합 지원사업(2차 연장) 공고문

용인시산업진흥원은 관내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해 「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통합 지원사업(2차 연장)」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6월 19일  
용인시산업진흥원장

## 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집적지 내 소공인의 사업화·마케팅 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
- 지원규모:

지원구분	사업명	지원한도	지원규모	세부내용
패키지 지원	청년 소공인 패키지	최대 700만원	1개사 내외	○ 해당 집적지 내 청년(만19~39세)대표 소공인 대상 ○ 협약금액 내 시제품, 산업재산권, 온/오프마케팅 지원 내역 통합 (3가지 분야 중 최소 2가지 분야 선택 必)

## 2 지원자격

- 신청자격: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
  -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, 하갈동, 서천동, 농서동, 동백동, 중동, 구갈동에 **본사 또는 공장**이 소재하는 기업
  - 주업종 코드: C261), C282), C293)
- 신청제한: 모집공고일 기준 아래 내용이 해당하는 경우

구분	세부내용
----	------

- 1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
- 2) 전기변환·공급·제어장치, 일차전지, 케이블, 전구조명장치, 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
- 3)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

<p><b>참여제한</b></p>	<p>○ 정부·지자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</p>															
<p><b>중복지원</b></p>	<p>○ 당해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<b>지원사업 5건 초과 수혜</b> 기업 (단, 멘토링·컨설팅 제외) ○ 당해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<b>2천 만원 이상의 단일 지원 사업 수혜</b> 기업 ○ 중복판단: <b>동일제품, 동일지원 내용을 중복으로 판단이 원칙,</b> 동일성 여부는 진흥원 판단을 기준으로 하며 <b>유관기관 중복 지원 여부 확인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3 584 1423 1021"> <thead> <tr> <th>사업구분</th> <th>사례유형</th> <th>세부내용</th> <th>판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제품</td> <td>동일제품 /동일제작분야</td> <td>[A제품] 목업▶경기도지원 ▶진흥원지원</td> <td>중복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인증특허출원</td> <td>동일제품 /동일인증</td> <td>[A제품] KC인증▶경기도지원 ▶진흥원지원</td> <td>중복</td> </tr> <tr> <td>동일제품 /동일특허인증</td> <td>[A제품] 국내특허▶경기도지원 ▶진흥원지원</td> <td>중복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구분	사례유형	세부내용	판정	시제품	동일제품 /동일제작분야	[A제품] 목업▶경기도지원 ▶진흥원지원	중복	인증특허출원	동일제품 /동일인증	[A제품] KC인증▶경기도지원 ▶진흥원지원	중복	동일제품 /동일특허인증	[A제품] 국내특허▶경기도지원 ▶진흥원지원	중복
사업구분	사례유형	세부내용	판정													
시제품	동일제품 /동일제작분야	[A제품] 목업▶경기도지원 ▶진흥원지원	중복													
인증특허출원	동일제품 /동일인증	[A제품] KC인증▶경기도지원 ▶진흥원지원	중복													
	동일제품 /동일특허인증	[A제품] 국내특허▶경기도지원 ▶진흥원지원	중복													
<p><b>세금체납</b></p>	<p>○ 국세·지방세 체납,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</p>															
<p><b>채무불이행</b></p>	<p>○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</p>															
<p><b>부도/휴·폐업</b></p>	<p>○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</p>															
<p><b>허위서류</b></p>	<p>○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</p>															
<p><b>기타</b></p>	<p>○ 기타 관련 법령,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</p>															

### 3

## 신청접수

- 공고기간: 공고 시 ~ 2025. 6. 23.(월) 17:00
- 신청방법: 소상공인24(<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399>) 온라인 신청
- 접수방법: 엑셀(\*.Xlsm)양식을 작성·저장하고 압축파일(ZIP)로 만들어 신청시스템에 업로드 (신청양식 PDF변환 불필요)
- 제출서류: **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**

구분	붙임 번호	제출서류	부수	참고사항	발급처	
신청서 사업계획	-	지원신청서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누락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『-』 표시</li> <li>• 기업 직인 날인(서명불가)</li> </ul>	해당서식	
	-	사업계획서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</li> </ul>		
필수제출	1	주업종확인서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업종(코드) 기준으로 작성</li> </ul>	홈택스	
	2	사업신청 동의서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직인 날인(서명불가)</li> </ul>		
	3	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직인 날인(서명불가)</li> </ul>		
	4	사업자등록증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업태 내 제조업 명시 필수</li> </ul>		
	5	중소기업확인서 [소기업(소상공인)]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확인서 내 소상공인 명시 必</li> <li>• 중소기업확인서 <b>발급불가 시</b> 4대보험 가입자명부</li> </ul>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(4대보험정보 연계센터)	
	6	주업종 홈택스 조회화면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첨부파일 [참고1]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고</li> </ul>	홈택스	
	7-1 7-2	2024년 재무제표, 손익계산서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인사업자 또는 2024년 재무제표 발급전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</li> </ul>	홈택스 정부24	
	8 9	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	각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세납입, 지방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</li> <li>※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선정 후 대표(개인)명의 납입증명서 추가 제출 요청</li> </ul>	홈택스 정부24	
공급업체	10 11 12	공급예정업체견적 타업체비교견적 공급예정업체 사업자등록	각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급업체 선정사유 구체적으로 작성</li> <li>• <b>타업체 연락처 첨부 必</b></li> </ul>	개별	
	가점기타	해당시	여성기업확인서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우수기업 인증서	각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모집 공고일기준 유효기간 내 必</b></li> <li>• (여성 대표자) 여성기업 확인서</li> <li>• (진흥원 입주기업) 입주계약서</li> <li>• (용인시/일자리창출)우수기업 인증서</li> </ul>	개별
		해당시	기타서류	각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관내 소재지가 공장인 경우 공장등록증첨부</b></li> <li>• 그외 사업 또는 관련 추가서류 첨부</li> </ul>	개별

## 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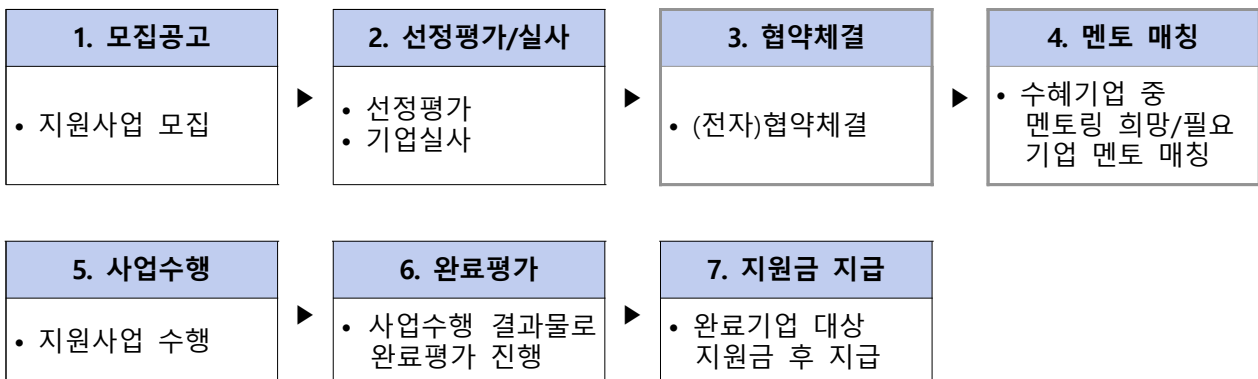
## 추진일정 및 절차

※ 운영상황에 따라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음

## □ 추진일정

구 분	일 정	일 수	내 용
공고 및 신청접수	공고 시 ~ 6. 23.(월) 17:00까지	-	○ 온·오프라인 채널 홍보 ○ 온라인 신청(소상공인24 신청페이지)
서류검토 및 보완	6. 24.(화) ~ 6. 25.(수)	2	○ 가점 및 지원대상여부, 지원 판단
선정평가	6. 27.(금)	1	○ 외부전문가 지원여부 판단 ○ 서류평가 또는 (필요시) 화상 질의응답 ○ 선정기업 대상으로 개별 실사 일정 안내
기업실사	7. 1.(화) ~ 7. 2.(수)	4	○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, 현장 확인 등
선정통보	7. 4.(금)	1	○ 최종 선정결과 진흥원 누리집 게시
협약체결	7. 7.(월) ~ 7. 8.(화)	2	○ 전자협약(글로사인)진행 ○ (법인/대표자)인감 날인 (사용인감 대체가능)
사업수행	7. 7.(월) ~ 9. 19.(금)		○ 9월 19일까지 사업마감
완료보고서 접수	9. 8.(월) ~ 9. 19.(금)	12	○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서류 접수
보고서 검토 및 보완	9. 22.(월) ~ 9. 24.(수)	3	○ 당초 계획대비 수행결과 적정성 검토 ○ 필요시 서류 보완요청
완료평가	9. 26.(금)	1	○ 지급승인 및 감액지급 여부 확인 ※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은 결과물 제출로 완료평가 같음
지원금 지급 처리	9. 29.(월) ~ 10월 중		○ 해당계좌 계좌 입금처리

## □ 추진절차



## 5 선정평가

□ 선정방법 : 1차) 대상 및 가점사항 확인 / 2차) 서면평가 (필요시 화상연결)

□ 구 성 : 외부 심사위원 5인

□ 선정결과 ※ 평가항목 및 가감점 기준은 진흥원 내부기준 적용

○ 평가 위원별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

○ 동점처리: 영세기업(직전년도 매출, 근무인원 적은 기업)순으로 우선 선정

○ 예비선정: 최초 미선정 기업 중 70점 이상은 예비번호를 부여하며

사업포기, 탈락, 실패 및 잔여로 인한 지원금 발생 시 예비번호 순으로 추가지원

○ 평가항목 : 4개 항목 총점 100점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배 점
지원의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진 목적 및 배경</li> <li>추진 필요성</li> </ul>	20점
기업(제품)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</li> <li>기업 현황(인증, 특허, 유망중소기업 등)</li> <li>사업수행능력</li> <li>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</li> </ul>	20점
사업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</li> <li>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</li> <li>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</li> <li>활용계획의 타당성</li> </ul>	40점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상 성과(매출, 고용, 인지도 등)</li> <li>파급효과(산업적, 경제적 효과 기여)</li> </ul>	20점

□ 가감점 기준: 가·감점은 선정 평가시 1회

구 분		점 수	비 고
가점	진흥원 입주기업	+1점	
	여성기업	+1점	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
	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	+1점	용인시 인증서 ※ 중복적용불가
감점	지원금액 총계 (전년도)	5천만원 이상	-4점
		3천만원 이상	-3점
		3천만원 미만~2천만원	-2점
		2천만원 미만~1천만원	-1점
	매출액 (전년도)	300억원 이상	-4점
		300억원 미만~200억원	-3점
		200억원 미만~100억원	-2점
		100억원 미만~50억원	-1점

## 6 멘토링 연계

- 지원규모: 6개사 × 4시간
- 연계일정: 2025년 8월 예정
- 추진방법: 온라인, 오프라인 병행
- 지원내용: 시장수요 조사 및 시제품제작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수정
- 연계기준: 다음 기준과 잔여 사업량에 따라 운영

구 분	내 용
지원순위 1	지원사업 선정기업 중 멘토링 희망 기업
지원순위 2	선정평가 시 외부전문가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'멘토링'이 필요 의견을 낸 경우

## 7 유의사항

### ○ 지원불가 사항

구 분	내 용
지원불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빙서류가 불충분 함에도 제출기간 내 소명되지 않은 지출금액</li> <li>• 기업 대표자 또는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금액</li> <li>• 기업명의(계좌/카드)로 지급처리 되지 않은 금액(현금거래 불가)</li> <li>• 후원금, 연체료, 위약금, 수당 성격의 금액</li> <li>• 간이세금계산서, 수기작성 증빙</li> <li>• 부가세 및 관세, 그밖에 수수료성 비용 지출</li> <li>• 분할 지급 방식(할부)의 지출금액</li> <li>• 인건비, 임차료, 자산취득비, 식비, 회의비 등 해당사업과 연관이 없는 금액</li> <li>• 특수관계자(직계비존속, 친척, 배우자, 이해관계자)와의 거래 금액</li> <li>• 신청대행사를 통한 지원이 판명된 금액</li> <li>• 그 외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센터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금액</li> </ul>

※ 지급 인정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필히 [센터와 사전협의 후 진행](#)

- 마감일 이후에 접수 서류는 선정평가에서 제외됨
-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및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공고문, 기타 발송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선정평가 시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

우 이를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음

- 지원상황에 따라 최종선정 시 예비순위를 발표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 기간 중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함
- 본 공고문이 진흥원 규정 및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진흥원 규정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업운영 매뉴얼의 내용을 적용함
- 종료 후 기관 결과보고를 위해 기업 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당초 추진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유선, 이메일 등으로 별도 안내함
- 사업중단 및 실패에 대한 제재사항은 [참고1]의 기준 적용함

[붙임]	신청양식	각1부
[참고1]	참여제한 및 지원금회수대상 제재등급	1부
[참고2]	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방법	1부
[참고3]	표준산업분류 연계표 (11차)	1부
[참고4]	소상공인24 사업신청 매뉴얼	1부
[참고5]	용인시산업진흥원 2025년 지원사업 내역	1부

(끝.)